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 대책 및 기본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[불임]

나. 적용지역 : 전라남도 전 지역

다. 처분기간 : '21. 7. 14.(수) 0시 ~ 7. 31.(토) 24시까지

* 처분 효력발생일 : '21. 7. 14.(수) 0시~

라. 처분내용 :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

- 예방접종완료자 사적모임 등 인원 산정에 포함
-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
- 집회는 100명이상 금지 및 행사는 100명 이상시 관할 지자체 신고
-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
-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

* 유흥시설 : 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

-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·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

마. 처분사유 : 변이바이러스, 여름 휴가철 등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 대책 시행

바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사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2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2항 (300만 원 이하)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(10만 원 이하)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1년 7월 14일

전라남도지사


불임1**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[21. 7. 14. ~ 7. 31.]****《완화 불가한 조치》**

- ▶ 사적모임 인원(예방접종완료자 포함)을 8명까지 허용
- ▶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

* 적서 볼드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 - <u>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</u>
기타 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 ▶ 집회·시위의 경우 100명 미만 ▶ (신고·협의) 100명 이상의 모임·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·협의 승인
② 1그룹 시설	
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클럽, 나이트는 8m²당 1명 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(감성주점, 헌팅포차, 단란주점) 춤추기 금지
콜라텍무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(수기명부 불가)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
홀덤펍·홀덤게임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
③ 2그룹 시설	
식당·카페 (일반음식, 휴게, 제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²이상) ▶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노래(코인)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, 30분 간 환기)
목욕장업 (목욕탕,찜질방,사우나시설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▶ 공용물품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
실내체육시설 (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GX류 운동(그룹댄스운동, 스피닝, 에어로빅 등), 체육도장(태권도, 유도 등)은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④ 3그룹 시설

학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 면적 4m²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·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띄우기 없음 ▶ 출입자 명부 작성(예매자에 한해 예외)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웨딩홀별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빈소별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이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면적 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좌석,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실내체육시설 (비교적 중·저강도 운동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운동복,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
유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입자명부 작성·관리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오락실·멀티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면적 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m ²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·소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용물품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(쇼핑용카트) 등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(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
⑤ 기타 시설	
스포츠경기(관람)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실내) 경기장 수용인원의 50% (실외) 경기장 수용인원의 70%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,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
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용인원의 50% 전자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불가)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면적 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외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가능한 한 개인물품 사용 권고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직계가족은 예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객실 내 '정원'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(공용공간)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파티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² 이상)
도서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용인원의 70%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설 내 식당·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,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

구분	도내 1단계 지역 (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+방역수칙 조정)
키즈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
돌잔치전문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m²이상)
전시회·박람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▶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·시식공간 이용 ▶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
마사지업소, 안마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6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운영자,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
국제회의·학술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▶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, 사전등록제 운영
종교시설 방역수칙	
종교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체 수용인원의 50%(한 칸 띄우기) ▶ 모임/행사·식사·숙박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예방접종자(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포함) 종교시설 내에서 (정규예배 전·후)식사 허용 ▶ 종교활동 전/후 반드시 환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▶ 큰 소리로 함께 기도·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·찬양팀(독창 제외) 금지 안내 ▶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
사업장 방역수칙	
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자율시행
물류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안내
콜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